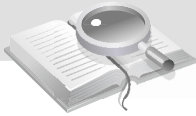


## | 정책발표 |

## 한·미 FTA와 식품산업



정 현 출

농림부 자유무역협정2과

## I. 서론

역사적인 한·미 FTA 협상에 투입된 한국과 미국의 협상가들은 지난 4월 2일 새벽까지 치열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이후 양국 법률 전문가의 협정문 검토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6월 말 양국 통상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협정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이로써 작년 2월 초 출범을 선언한 대규모의 협상이 종결된 것이다. 그러나 이 협정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국회가 협정 비준에 동의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9월 7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함으로써 비준동의 절차를 개시했다. 한·미 FTA 협상은 우리 통상협상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협상이었다. 협상에서 다루는 의제의 폭도 매우 넓었고, 협상단의 규모도 다른 협상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다. 이처럼 큰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쌓은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경제 환경을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장단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우리 사회의 의제(agenda)로 부각시키는 효과도 거두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명암이 같이 있는 것처럼 농업과 같이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같이 취약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수입확대로 인한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농업도 대외개방 환경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며, 한·미 FTA 체결은 그러한 노력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한·미 FTA에서 농업분야의 협상 결과가 어떤지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동안 주로 다루어진 기초 농산물 외에 식품분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식품산업은 주로 중소규모의 기업이 진출해 있는 분야이고 이미 폭넓게 대외 개방이 이루어진 분야이기 때문에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FTA 체결은 단지 관세 인하의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며, 체결 상대국에 대한 인지도 상승 등 무형의 효과도 있어 무역확대를 도모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FTA 시대를 다각도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 II. 농업 협상의 개요와 FTA 협상에 대한 이해

### 1.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1947년 4월 제네바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최초의 관세인하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리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이 탄생되었는데 GATT는 국제교역의 확대와 함께 그 기능과 역할이 점점 더 커졌다. 특히 GATT는 4차례에 걸친 관세인하협상, 1960년대의 딜론 라운드(Dillon Round)와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1970년대 도쿄라운드(Tokyo Round), 1980년대의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를 통해 농산물까지 포함한 자유무역의 확대와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해 노력해왔다. 농산물의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부터이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준비는 1982년부터 시작됐는데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 의제에 농산물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대립,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 등으로 협상 출범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논의해야 할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는 한편 새로운 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 끝에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폰타 델 에스테에서 각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우루과이 라운드를 출범시켰고 농업이 협상 그룹의 하나로 최초로 포함되었다. 이후 1989년 4월 중간평가회의, 1990년 12월 브뤼셀 각료회의, 1991년 12월 던켈 총장 초안 제시, 1992년 11월 블레어 하우스 합의 등의 중요한 고비를 거쳐 1993년 12월에야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고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종결 선언을 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그렇게 해서 1995년 1월 탄생한 것이 WTO 체제이다.

GATT와 WTO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 우선 GATT는 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이 약했으나 WTO는 규범력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GATT 체제는 당초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는 ITO라는 국제기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좌절된 상태에서 탄생되어 다소 즉흥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이 강했다. WTO에서는 회원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GATT에서는 체약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서 GATT 자체가 국제기구가 아니라 법적효력을 가지는 문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GATT가 상품무역만을 다루는데 반해 WTO는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등 상품 이외의 교역까지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또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승소한 쪽이 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등 법적인 실효성이 더 강하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 중 농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크게 시장접근, 국내보조금 감축, 수출보조금 감축 및 동식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 획기적인 것은 모든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국내의 가격의 차이만큼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를 계산하여 이를 관세로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모든 품목의 시장을 예외 없이 개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관세화(tariffication)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해 종전의 각종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관세만을 보호수단으로 남기게 되었다. 이처럼 관세상당치를 기초로 관세율을 결정한 후 이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을 통해 시장개방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는데 선진국의 경우 전 농산물 품목의 평균 관세를 6년 동안 36%를 감축하도록 하였고 개도국의 경우 10년 동안 평균 24%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국내 소비량에 비해 수입품의 비중이 매우 낮은 품목의 경우 관세화 이행과정에서 수출국에게 최소한의 수

출물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물량의 시장접근 물량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수입 급증이나 수입 가격하락으로 인해 동 품목의 국내 시장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수입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기준물량을 초과할 경우 관세를 추가하여 더 부과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보조금은 무역에 왜곡효과를 초래하므로 감축하기로 한 보조금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 보조금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무역에 왜곡효과를 초래하여 감축해야 하는 국내보조는 전 품목의 보조를 합산한 총 보호추정치(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를 계산한 다음 선진국은 이를 6년간 20% 감축하도록 하였고, 개도국은 10년간 13.3% 감축하도록 하였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보조금은 연구·지도·검사·유통개선·하부구조개선·식량안보 목적의 재고유지·국내 식량원조·작물보험·소득안정화사업·재해구조·탈농지원·휴경보상·투자지원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환경보전·지역개발 등을 위해 사용되는 보조금이다. 수출보조금도 감축하기로 했는데 선진국은 6년간 재정지출기준으로 36%를 수출물량 기준으로는 21% 감축해야 하며, 개도국은 선진국 감축 수준의 2/3만 감축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감축 대상인 수출보조는 6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출수행을 조건으로 한 기업·산업·농산물생산자·생산자조합·마케팅보드에 지급하는 현물을 포함한 직접보조, 비상업적 재고의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수출, 정부의 행위에 의해 조성된 재원을 통한 수출보조, 수출농산물의 출하·등급·운송비 등을 포함한 유통비용 보조,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운송비 지원, 수출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등이 해당된다.

동식물 검역 분야의 기본적인 합의내용은 검역조치가 무역규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검역기

준 설정은 각국의 고유권한이나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최대한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국이 자신들의 동식물 검역조치로 인한 보호수준이 수입국의 보호수준과 동일함을 입증할 경우 수입국은 이를 적절한 조치로 인정해야 한다는 동등성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이 수립되었다. 또한 국제기구가 개발한 위험평가방법에 의하여 동식물 검역조치의 강도와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평가(Assessment of Risk)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회원국은 동식물 검역조치의 변경내용을 WTO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2. WTO·DDA 협상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각국의 시장개방 이행기간은 2004년에 종료되므로 2005년 이후에 시장개방의 폭을 더 확대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지난 1999년 11월 시애틀 각료회의를 통하여 협상을 출범시키려고 했으나 좌절되었고,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여러 차례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그동안 범세계적인 다자협상의 명칭에는 일반적으로 '라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DDA 협상에는 「개발 의제(Development Agenda)」라는 색다른 이름을 붙였다. 이는 시장개방의 효과가 선진국에는 혜택을 주었으나 개도국에는 이익을 주지 못했다는 개도국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이번 협상에는 개도국의 개발 문제도 주요한 논의 과제로 하지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DDA 협상은 2005년부터는 새로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2004년 이전 모든 협상을 끝내려던 당초 의도와는 달리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구동력을 유지하는 정도의 지지부진한 성과만 거두었다.

2006년 들어서 관세와 국내 보조금 감축, 수출 경쟁분야 규율에 관한 세부원칙을 타결하기 위한 협상을 가속화했고, 미국 정부가 미 의회로부터 부여 받은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이 2007년 6월말에 종료되므로 그 이전에 협상을 모두 종결하기 위해 2006년 7월 말까지는 세부원칙의 타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도출에는 실패하였고, 결국 2006년 7월 24일 WTO의 라미 사무총장이 협상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선언하였다. 2007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열린 소규모 각료회의 이후 다시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주요 4개국(미국, EU, 인도, 브라질)간에도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는 등 여전히 최종 협상타결까지는 많은 난관을 돌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협상속도를 다시 올리고 있으나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도 긍정과 비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DDA 협상에서의 쟁점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협상과 마찬가지로 시장접근, 국내보조금, 수출경쟁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국내의 가격차만큼 관세율을 책정함으로써 시장이 개방된 농산물의 관세를 추가로 낮추는 방식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관세 상한선을 정하는 문제도 논의 중이다. 또한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감축율을 높이고 관세율이 낮은 품목은 감축율을 다소 낮추는 방식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신속하게 관세를 감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장접근 분야에서 또 다른 쟁점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설정된 시장접근 물량의 관리방식이다. 시장접근 물량은 고율관세로 인해 시장개방 효과가 낮은 품목에 대해 일부라도 낮은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이 물량이 모두 다 수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설정된 물량이

다 수입되지 않는 것을 그 관리 방식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수출국들이 들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정부가 국영무역을 실시하면서 시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 점, 별도의 수입조건을 부가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소비와 연계시키는 점,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여 국내 농산물과의 가격 차이를 없애버리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장접근 물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수출국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수입국들은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방식에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내 시장교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관리방식을 가급적이면 수입국 재량으로 남겨 두자는 입장이다. 국내 보조금은 보조금 규모가 큰 나라일 수록 많이 감축하자는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 EU, 일본과 같이 국내 보조금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감축 의무를 많이 지움으로써 무역 왜곡적인 효과를 대폭 없애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국내 보조금의 급격한 감축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수출 경쟁분야에서는 수출보조금의 감축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원칙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철폐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수출보조금을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EU이다. 수출보조 이외 수출신용보증, 수출국영무역기관 등에 대한 규율도 같이 논의되고 있다.

### 3. FTA 등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WTO가 보편적이고 다자적인 무역질서를 형성한다고 한다면 각 지역별로 무역질서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지역주의(regionalism)라고 하는데 EU와 같은 관세동맹과 NA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이처럼 지역이나 양자 차원에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WTO로 대변되는 다자 무역협상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며, 모든 회원국들이 합의하는 개방조건에 따라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회원국의 고유한 특성이나 특정 지역만의 독특한 사정을 반영하는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관세동맹을 결성하거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시장개방의 속도를 가속화함으로써 개방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원하는 상대 국가와 맞춤형 개방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하여 EFTA, 싱가포르, ASEAN, 미국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지금도 캐나다, EU, 인도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관세동맹이나 FT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크게 정태적인 효과와 동태적인 효과로 구분되며, 정태적인 효과는 다시 무역 창출(trade creation) 효과와 무역 전환(trade diversion) 효과로 구분된다. 무역 창출 효과는 역내 국가간 무역장벽이 낮아지거나 철폐됨에 따라 무역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하는데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역내 국가간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고 무역량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무역 전환 효과란 관세동맹이나 FTA가 그 역내 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무역장벽을 낮추게 되지만 그 역외 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통해 역외 국가와의 무역이 역내 국가와의 무역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말한다. 관세동맹이나 FTA 체결 시 무역 창출 효과가 무역 전환 효과를 능가하면 교역이 확대되고 국민의 경제적인 후생이 증가하지만, 무역 전환 효과가 무역 창출 효과를 상회하면 특혜무역지대 형성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반드시 경제적인 후생의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태적인 효과 외에 역외로부터 투자유치 효과나

역내 경쟁심화를 통한 경제적인 효율성 증대 효과와 같은 동태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WTO로 대변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는 충돌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GATT나 WTO의 가장 큰 원칙은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원칙이다. 최혜국대우란 관세나 무역제도에서 회원국 간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회원국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동맹이나 FTA는 특정 국가 간이나 특정 지역 간 특혜무역지역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최혜국대우 원칙과는 맞지 않게 된다. 그래서 GATT 제24조에는 이러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를 조화시키기 위한 규정이 있는데, 지역무역협정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서 관세나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해야 하며 역외국에 대한 관세나 무역장벽을 높이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WTO 산하의 일반이사회에는 지역무역협정을 검토하고 WTO 협정의 위반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지역무역협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 Ⅲ.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

#### 1.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 개요

한·미 FTA 협상에서 농업 분과는 상품 중 농산물에 대한 양허계획<sup>1)</sup> 및 농업부문에만 적용되는 협정문의 내용을 협상했다. 농산물은 한·미 FTA 협정문 중 주로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및 「제3장 농업」의 적용을 받게 된다. 농산물도 상품의 일부이므로 원칙적으로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의 적용을 받는데, 농산물 양허안 및 수입쿼터 관련 세부

1) 양허란 국가간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당사국이 특정품목의 관세수준에 대해 서로 합의하는 것이며 양허된 관세율을 표로 만든 것을 양허표라 한다.

사항은 협정문 제2장의 부록에 다른 공산품, 수산물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기술되어 있다. 「제3장 농업」은 농산물 교역과 관련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정문 적용 대상 및 범위, 수입쿼타 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농산물 무역위원회, 정의 규정 등 총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문 내용 중 핵심은 수입쿼타 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농산물 무역위원회 등 세 가지이며,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3장의 부속서에 기술되어 있다.

## 2. 농산물에 대한 관세양허

### 2.1. 우리측 농산물 양허

농산물 양허협상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다. 미측은 협상 초기부터 일관되

게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여 우리 입장 반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체결한 여타 FTA에 비해서는 양허수준이 높으나 양허제외, 수입쿼타(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과 함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하고,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에서 10년까지 기간을 차별화하여 관세를 철폐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과 국내 수입수요가 거의 없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는데, 산동물·원피·종축·화훼류·커피·포도주·밀·사료용 옥수수·채유용 대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 1.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 개요

양허 유형	품목수	비중	수입액 (천불)	비중	주요 품목
양허제외	16	1.0%	25,555	0.9%	쌀
현행+TRQ	15	1.0%	209,334	7.0%	오렌지(성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17, 계절관세	1	0.1%	4,099	0.1%	포도
15, 계절관세	0(1)	0.1%	0	0.0%	칩용 감자
18+TRQ	4	0.3%	1	0.0%	인삼(수삼, 백삼의 본삼·미삼·잡삼)
15+TRQ	10	0.6%	93,504	3.1%	치즈, 사료용 근채류, 맥주맥, 보리, 옥수수 전분
12+TRQ	6	0.4%	8,370	0.3%	보조사료, 변성 전분
10+TRQ	11(1)	0.8%	3,233	0.1%	버터, 조제분유(유아용), 유장(식용), 체다치즈
20	0(2)	0.1%	0	0.0%	사과(후지), 배(동양배)
18	3	0.2%	0	0.0%	홍삼(본삼·미삼·잡삼)
16	2	0.1%	1,057	0.0%	설탕
15	98(2)	6.5%	353,259	11.8%	육우, 쇠고기, 계란, 녹용, 녹각,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표고버섯, 키위, 호두(미탈각), 감귤, 녹차, 쌀, 잣, 참깨, 참기름, 주정, 전분, 혼합조미료 등

12	34	2.2%	13,504	0.5%	젓소, 닭고기(냉동가슴살, 냉동날개), 난황(건조, 기타), 냉동양파, 수박, 멜론 등
10	332	21.4%	121,840	4.1%	산 돼지, 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사과주스(브릭스 20 이내), 앞담배, 자두, 로얄젤리, 인조꿀, 닭다리(냉동), 돼지고기(냉장 삼겹살·목살·갈비 등), 고구마, 사과(후지 제외), 배(동양배 제외), 찐쌀, 쌀의 배아, 송이·느타리·팽이·영지버섯
9	1	0.1%	0	0.0%	신선딸기
7	41	2.6%	59,293	2.0%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 옥수수, 옥수수(가공용), 포도(조제저장처리), 사과(조제저장처리), 사과주스(브릭스 20 초과) 등
2014. 1. 1까지	21	1.4%	57,689	1.9%	돼지고기(냉장 도체 및 이분도체, 냉장 전·후지, 냉동육, 설육, 가공품)
6	2	0.1%	13,070	0.4%	옥수수유(기타), 호두(탈각)
5	317(2)	20.6%	347,007	11.6%	오렌지주스(냉장), 토마토주스, 크랜베리주스, 자두주스, 완두콩, 감자(냉동), 위스키, 스파케티, 국수, 당면, 냉면, 인스턴트 커피, 간장, 고추장 등
3	33	2.1%	66	0.0%	해조류 등
2	6	0.4%	6,921	0.2%	아보카도, 레몬, 프룬(건조자두),콜라베이스
즉시 철폐	578(9)	37.9%	1,665,517	55.8%	오렌지주스(냉동), 포도주스, 산동물, 종축, 원피, 면화·마 등 섬유 원료,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대두(채유용, 장류제조용), 사료용 완두, 사료용 유장
계	1,531(17)	100%	2,983,317	100%	

\* ( )안 품목은 세번 분리된 품목

## 2.2. 미국측 농산물 양허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은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미측은 자국의 농업경쟁력을 바탕으로 개방수준이 높은 양허안을 작성했으며 협상 결과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15년 이내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96.4%, 우리나라의 농산물 대미 수출액 기준으로는 99.98%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미국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은 9.4%로

우리의 52.9%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하기로 하여, 라면(관세율 6.4%, 이하 괄호 안은 관세율), 배(0.2%), 음료(0.2%), 쌀로 만든 주류(0.5%), 튀김(4%), 간장(3%), 된장·고추장(6.4%), 삼계탕(6.4%), 김치(11.2%) 등 품목수 기준으로는 58.7%, 대미 수출액 기준으로는 82%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표 2. 미국측 농산물 양허안 개요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수입액 (백만불)	비중(%)	주요 품목
10년 철폐, 수입쿼타	26	1.4%	0.32	0.1%	낙농품 (300MT)
15	65	3.6%	0.03	0.0%	멥쌀, 쇠고기, 치즈
10	154	8.5%	4.33	1.9%	설탕, 면화
7	91	5.0%	30.92	13.8%	담배, 대두유(조유), 채소(조제저장)
6	1	0.1%	0.00	0.0%	호두(탈각)
5	401	22.1%	4.56	2.0%	아이스크림, 버섯
2	10	0.6%	0.20	0.1%	자두(조제저장), 단백질계 물질
즉시철폐	1,065	58.7%	184.33	82.0%	라면,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간장, 된장, 고추장, 삼계탕, 김치, 포도주스, 오렌지주스(냉동)
합계	1,813	100%	224.70	100%	

### 3. 주요 품목별 한·미 FTA 협상 결과

표 3. 식량작물

품목명	협상 결과
쌀 (관세화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li> <li>* 제3장(농업) 제1조의 각주와 제2장의 부속서 2-나(양허표)에 대한 한국측 일반주해 문단 3의 (타)를 통해 쌀 관련 16개 세번은 관세에 관한 어떠한 추가 의무 없이 쌀 관세화 유예에 관한 협상(2005. 4. 13)의 결과로 작성된 WTO 문서 WT/Let/492 (양허표 LX-대한민국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수정본에 있는 결과를 이행한다고 명시</li> </ul>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용대두의 현행관세(487%) 유지를 조건으로, 장유박용 세번 분리 및 식용대두 무관세쿼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유 및 대두박용(06년 할당물량 1,414 천톤, 관세 1%) : 즉시철폐</li> <li>- 장유박용(06년 TRQ 수입량 25천톤, 5%) : 즉시철폐</li> <li>- 식용대두(06년 TRQ 수입량 221천톤, 5%) : 현행관세 유지, 무관세쿼타 1년차 10천톤, 2년차 20천톤, 3년차 25천톤(매년 복리 3% 증량)</li> </ul> </li> </ul>
감자· 감자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용감자는 현행관세(304%) 유지를 조건으로 무관세쿼타 제공, 칩용감자는 별도로 세번을 분리하여 계절관세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용 : 현행관세 유지, 무관세쿼타 3천톤(매년 복리 3% 증량)</li> <li>- 칩용 : 계절관세(12~4월 : 즉시, 5~11월 : 7년 유예 8년 철폐)</li> </ul> </li> <li>◦ 감자분(304%) : 10년 철폐, 무관세쿼타 9년 제공, 5천톤(매년 복리 3% 증량) 농산물 셰이프가드(ASG) 적용</li> </ul>



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li> <li>- 겔보리(324%) + 쌀보리(299.7%) : 14년 제공, 2,500톤(매년 복리 2% 증량)</li> <li>- 맥아(269%) + 맥주맥(513%) : 14년 제공, 9,000톤(매년 복리 2% 증량)</li> </ul>
옥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li> <li>- 옥수수 기타(328%) : 6년 제공, 93,774톤(1년차)~393,849톤(6년차)</li> <li>- 옥수수 팝콘(630%) : 6년 제공, 2,556톤(1년차)~10,735톤(6년차)</li> </ul>
전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또는 12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li> <li>- 옥수수 전분(226%) : 14년 제공, 10,000톤(매년 복리 3% 증량)</li> <li>- 변성 전분(385.7%) : 11년 제공, 14,000톤(매년 복리 3% 증량)</li> <li>- 감자 전분(455%), 매니옥전분(455%), 고구마전분(242.1%), 기타전분(800.3%) : 14년 제공, 각 품목 0.5톤씩(매년 각 품목 0.5톤씩 증량)</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또는 10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각 1천톤 미만 제공</li> <li>- 팥(420.8%), 녹두(607.5%), 고구마(385%), 기타서류(385%), 메밀(256.1%)/기타곡물(800.3%), 기타가공곡물(800.3%), 발효주정(270%)</li> </ul>

표 4. 육류

품목명	협상 결과
쇠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감한 6개 세번(40%) : 15년 철폐, 동 기간 중 ASG 적용</li> <li>*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li> <li>- ASG 발동물량 : 270천톤(1년차) → 354천톤(15년차, 매년 6천톤 증량)</li> <li>- ASG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을 적용 → (6~10년차) 실행세율의 75% → (11~15년차) 실행세율의 60%</li> <li>◦ 육우(40%)와 식용설육(족·꼬리 등)(18%), 쇠고기 가공품(72%) 등 : 15년 철폐</li> </ul>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감한 2개 세번(22.5%) : 10년 철폐, 동 기간 중 ASG 적용</li> <li>* 냉장 삼겹살과 기타(갈비·목살 등)</li> <li>- ASG 발동물량 : 8,250톤(1년차) → 13,938톤(10년차, 6% 증량)</li> <li>- ASG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 적용, (6~10년차) 실행세율의 70%에서 50%까지 인하(매년 5%씩 감축)</li> <li>◦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22.5%), 냉동육(25%), 식용설육 (18~30%), 돼지고기 가공품(27~30%) : 2014. 1. 1 철폐(7년 철폐와 유사)</li> <li>◦ 소시지(18%) : 5년 철폐</li> </ul>
닭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닭(18~20%), 냉동(가슴살, 날개)(20%) : 12년 철폐</li> <li>◦ 냉장육(18%),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20%), 닭고기 가공품(30%) : 10년 철폐</li> </ul>
계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란(41.6, TRQ 30%), 전란액(27%) : 15년 철폐</li> <li>◦ 난황(27%) : 12년 철폐</li> <li>◦ 종란(27%) : 10년 철폐</li> <li>◦ 난백(8%) : 5년 철폐</li> </ul>
기타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고기(18~22.5%) : 냉장육 10년 철폐, 냉동육 12년 철폐</li> <li>◦ 산양·면양고기(22.5%) : 10년 철폐</li> <li>◦ 칠면조고기(18%) : 7년 철폐</li> <li>◦ 녹용·녹각(20%) : 15년 철폐</li> </ul>

표 5. 낙농품, 꿀, 사료

품목명	협상 결과
분유 연유 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지분유·전지분유(176, TRQ 20~40%)·연유(89, TRQ 40%) : 현행관세 - 무관세쿼타 제공 : 5천톤(매년 복리 3% 증량)</li> <li>혼합분유(36%) : 10년 철폐</li> <li>조제분유(36~40%)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9년 제공 : 700톤(매년 복리 3% 증량)</li> <li>유당(49.5, TRQ 20%) : 5년 철폐</li> </ul>
치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다치즈(36%) : 10년 철폐</li> <li>체다 이외의 치즈(36%) : 15년 철폐</li> <li>치즈 무관세쿼타 14년 제공 : 7천톤(매년 복리 3% 증량)</li> </ul>
밀크와 크림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크와 크림(지방함량 6% 이하) : 15년 철폐</li> <li>크림 기타(지방함량 6% 초과) : 12년 철폐</li> <li>냉동 크림(지방함량 6% 초과) : 10년 철폐</li> </ul>
버터 (89%, TRQ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9년 제공 : 200톤(매년 복리 3% 증량)</li> </ul>
유장 (49.5%, TRQ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용 : 20%부터 시작해 10년간 철폐 - 무관세쿼타 9년 제공 : 3천톤(매년 복리 3% 증량)</li> <li>사료용 : 즉시 철폐</li> </ul>
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연꿀(243%, TRQ 20%) : 현행관세, 무관세쿼타 200톤(매년 복리3% 증량)</li> <li>인조꿀(243%, TRQ 20%), 로얄제리(8%), 벌꿀조제품(8%) : 10년 철폐</li> </ul>
사료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료용 근채류(100.5%, 할당 2%) : 15년 철폐, - 무관세쿼타 14년 제공 : 20만톤(증량 없음)</li> <li>보조사료(50.6, TRQ5%) : 12년 철폐 - 무관세쿼타 11년 제공 : 5,500톤(매년 복리 3% 증량)</li> <li>사료용 옥수수(할당 0%), 대두(채유 및 박용)(할당 1%) : 즉시 철폐</li> </ul>

표 6. 과일 · 과채류

품 목 명	협상 결과
오렌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출하기(9~2월) : 현행관세(50%) 유지, 무관세쿼타 : 2,500톤(매년 복리 3% 증량)</li> <li>비출하기(3~8월) : 관세 30%에서 시작하여 7년 철폐</li> <li>오렌지쥬스(54%) : 냉동은 즉시철폐, 냉장은 5년 철폐</li> </ul>
감귤류(144%) 키위(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년 철폐</li> <li>감귤쥬스(54%) : 10년 철폐, 감귤(조제저장처리)(45%) : 10년 철폐</li> </ul>

사과(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지 계통 품종 : 20년 철폐, ASG 23년 적용</li> <li>◦ 기타 품종 : 10년 철폐, ASG 10년 적용</li> <li>◦ 사과즙(45%) : 브릭스 20 이내 10년 철폐, 브릭스 20 초과 7년 철폐</li> <li>◦ 사과(조제저장처리)(45%) : 7년 철폐</li> </ul>
배(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양배 품종 : 20년 철폐, 기타 품종 : 10년 철폐</li> <li>◦ 배(조제저장처리)(45%) : 10년 철폐</li> </ul>
포도(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출하기(5월~10월 15일) : 17년 철폐</li> <li>◦ 비출하기(10월 16일~4월) : 관세 24%에서 시작하여 5년 철폐</li> <li>◦ 포도주(15%) : 즉시 철폐, 포도즙(45%) : 즉시 철폐</li> <li>◦ 포도(조제저장처리)(45%) : 7년 철폐</li> </ul>
복숭아, 단감(45%) 감(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숭아, 단감, 감 : 10년 철폐</li> <li>◦ 복숭아(설탕첨가·밀폐용기의 것)(50%) : 10년 철폐, 복숭아(기타 조제저장처리)(45%) : 5년 철폐, 복숭아즙(50%) : 10년 철폐</li> </ul>
딸기(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초분류 딸기 : 9년 철폐, 나무딸기(신선) : 12년 철폐</li> <li>◦ 냉동딸기(초분류 및 나무딸기)(30%) : 5년 철폐</li> <li>◦ 초분류딸기(일시저장처리)(30%), 딸기즙(50%) : 10년 철폐</li> <li>◦ 초분류딸기(조제저장처리)(45%) : 15년 철폐</li> </ul>
토마토(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 및 냉장 : 7년 철폐</li> <li>◦ 조제저장처리(30%), 토마토즙(30%), 케첩(8%), 소스(45%) : 5년 철폐</li> <li>◦ 토마토 페이스트(5%) : 즉시 철폐</li> </ul>
오이(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시 철폐 (조제저장처리(30%)는 5년, 일시저장처리(30%)는 10년 철폐)</li> </ul>
가지(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시 철폐</li> </ul>
호박(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시 철폐 (건조호박(30%)은 10년 철폐)</li> </ul>
수박(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년 철폐</li> </ul>
멜론(참외)(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년 철폐 (껍질(30%)은 즉시 철폐)</li> </ul>

표 7. 양념채소, 인삼, 특작

품 목 명	협상 결과
고추(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5개 세번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li> <li>- 신선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 등</li> <li>◦ 냉동고추 : 15년 철폐</li> </ul>
마늘(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4개 세번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li> <li>- 통마늘·깐마늘·일시저장·건조마늘</li> <li>◦ 냉동마늘 : 15년 철폐</li> <li>◦ 초산조제·조제저장처리 마늘 : 10년 철폐</li> </ul>

양과(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 및 건조 양과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li> <li>◦ 냉동양과 : 12년 철폐</li> <li>◦ 초산조제 · 조제저장처리 양과 : 10년 철폐</li> </ul>
생강(37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선 생강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li> <li>◦ 설탕저장처리 생강 : 5년 철폐</li> </ul>
과(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조 과 : 7년 철폐</li> <li>◦ 조제저장처리 쪽과 : 5년 철폐</li> <li>◦ 쪽과 · 기타 과속채소 : 즉시 철폐</li> </ul>
인삼 (222.8~75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7개 품목 : 18년 철폐 및 ASG 20년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삼 및 홍삼 · 백삼 등 뿌리삼류(본삼, 미삼, 잡삼)</li> <li>- 무관세쿼타 제공 : 5.7톤(매년 복리 3% 증량)</li> </ul> </li> <li>◦ 홍삼가공품 9개 품목 : 15년 철폐 및 ASG 18년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삼분, 홍삼엑스, 홍삼타블렛 등</li> </ul> </li> <li>◦ 백삼분 2품목 : 15년 철폐</li> <li>◦ 그 외 인삼품목 : 10년 철폐</li> <li>◦ 의약품 3품목 : 즉시철폐</li> </ul>
참깨, 참기름 땅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철폐, ASG 18년 적용</li> <li>* 참깨 · 참기름(630%, WTO TRQ 40%),</li> <li>* 땅콩(230.5%, WTO TRQ 24%), 땅콩조제품(63.9%, WTO TRQ 40%)</li> </ul>

표 8. 업근채류

품 목 명	협상 결과
당근(30%)	◦ 5년 철폐 (건조·일시저장처리 10년)
무(30%)	◦ 10년 철폐 (건조는 7년)
배추(27%)	◦ 기타 · 신선 · 냉장 즉시, 신선 · 냉장 5년 폐지
채소류 혼합물, 순무, 양배추	◦ 즉시 철폐 (건조 양배추는 10년)
기타	◦ 연뿌리 · 기타식물(설탕저장처리) 5년, 고구마줄기 7년, 토란줄기 10년 철폐
기타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동·일시저장처리 : 즉시철폐</li> <li>◦ 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 5년 철폐</li> <li>◦ 건조는 7년, 신선 · 냉장은 10년 철폐</li> </ul>
채소 혼합주스, 기타채소 혼합물, 균질화한 채소 (유아용푸레콘 등)	◦ 5년 철폐

표 9. 기타 가공식품

품 목 명	협상 결과
설탕(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년차까지 30%로 감축하고, 16년차에 철폐</li> <li>- ASG 20년간 적용</li> </ul>
대두유(5.4%), 옥수수유(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두유 : 조유는 10년, 정제유는 5년 철폐</li> <li>옥수수유 : 조유는 5년, 기타는 6년 철폐</li> </ul>
혼합조미료(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분 중 고추·마늘·양파의 비중이 각각 20% 이상 또는 이를 합쳐서 40% 이상일 때 : 15년 철폐</li> <li>그 이외 : 5년 철폐</li> </ul>
장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된장, 춘장(8%) : 10년 철폐</li> <li>간장(8%), 고추장(45%), 기타장류(쌈장, 청국장) : 5년 철폐</li> </ul>
과자류, 빵류, 기타식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코렛류, 파이&amp;케이크 등 : 5년 철폐</li> <li>식빵, 건빵 등 빵류 : 10년 철폐</li> <li>커피, 라면, 소주, 포도주 등 : 즉시 철폐</li> </ul>

4. 수입쿼터 농산물 현황

	실품목	양허유형	수입쿼터(TRQ) 물량		
			제공기간	최초연도 제공물량(톤)	연간 증량
1	탈지분유·진지분유·연유	현행관세유지	제한없음	5,000	복리 3%
2	유장분말(식용) *사료용유장과 식용유장 분리	10년 철폐	9년	3,000	복리 3%
3	치즈류 체다치즈	15년 철폐 10년 철폐	14년 9년	7,000	복리 3%
4	조제분유(유아용)	10년 철폐	9년	700	복리 3%
5	버터	10년 철폐	9년	200	복리 3%
6	천연꿀	현행관세유지	제한없음	200	복리 3%
7	보조사료(동물사료)	12년 철폐	11년	5,500	복리 3%
8	사료용 근채류	15년 철폐	14년	200,000	고정
9	식용감자(신선)	현행관세유지	제한없음	3,000	복리 3%
10	식용대두(가공용)	현행관세유지	제한없음	1년차: 10,000 2년차: 20,000 3년차: 25,000	4년차부터 복리 3%
11	오렌지(3~8월)	현행관세유지	제한없음	2,500	복리 3%

12	보리	15년 철폐	14년	2,500	복리 2%
13	맥주맥·맥아	15년 철폐	14년	9,000	복리 2%
14	옥수수전분	15년 철폐	14년	10,000	복리 3%
15	변성전분	12년 철폐	11년	14,000	복리 3%
16	인삼	18년 철폐	17년	5.7	복리 3%

실품목 16개  
(양허표에는 46개 세번)

주) 수입쿼타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

### 5. 수입쿼타 품목별 관리방안

품 목 명	수입쿼타 관리방법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매 분기별로 수입권 공매</li> </ul>
버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매년 초 수입권 공매</li> <li>- 연초 공매에서 전량이 배분되지 않으면 후속 공매에서 배분</li> </ul>
치즈, 식용 유장, 조제분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유가공협회에서 과거 수입자 및 신규 수입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입권을 배분</li> </ul>
오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10년 동안 수입권 공매, 11년차부터는 최근 3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배분</li> </ul>
천연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매 분기별로 수입권 공매</li> </ul>
식용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권 공매</li> </ul>
보조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수요자로 구성된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에서 과거 24개월 실적과 당해연도 신청 물량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li> </ul>
사료용근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과거 24개월 실적과 당해 연도 신청 물량에 따라 배합사료 등록업자, 단미사료등록업자, 양축농가에게 수입권을 배분</li> </ul>
대두(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두가공업계에서 물량을 자율적으로 배정하고 이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수입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동 배정 물량에 대한 수입권을 각 업체에 배분</li> </ul>
인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권 공매</li> </ul>
보리, 맥아, 옥수수전분, 덱스트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매년 1월 중 수요자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쿼타를 일괄 배정하면서 수입권 배분</li> <li>- 신청물량의 합이 쿼타 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신청량에 따라 비례배분</li> <li>- 신청물량의 합이 쿼타 물량보다 적은 경우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아 재배정</li> </ul>

## 6. 농산물세이프가드 협상 결과

	실 품 목	초기연도 발동기준(톤)	최종연도 발동기준(톤)	적용기간(년)
1	쇠고기	270,000	354,000	15
2	돼지고기	8,250	13,938	10
3	마늘	1,148	2,297	18
4	양파	2,904	5,808	18
5	고추	827	1,655	18
6	녹두, 팥	238	714	15
7	고구마	212	530	10
8	서류	30	30	10
9	사과	9,000	20,429	23(후지) 10(기타)
10	녹차	8.3	16.6	18
11	생강	573	1,147	18
12	맥주맥·맥아	9,000	11,875	15
13	보리	2,500	3,299	15
14	옥수수(팝콘용)	5,112	11,246	7
15	옥수수(가공용)	187,547	412,603	7
16	메밀·기타 곡물	250	750	15
17	기타 가공곡물	128	299.10	15
18	감자 분·플레이크	5,000	6,524	10
19	옥수수 전분	10,000	15,126	15
20	감자 전분	239	717	15
21	매니옥 전분	433	1,299	15
22	고구마 전분	202	606	15
23	기타 전분	53	159	15
24	낙화생	140	281	18
25	참깨	3,561	7,121	18
26	참기름	30	61	18
27	인삼	62	103	20* 18*
28	설탕	833	1,461	20
29	발효주정	236	708	15
30	변성 전분	14,000	19,379	12

\* 수삼 및 홍삼·백삼 등 뿌리삼류(본삼, 미삼, 잡삼) : 20년

\* 홍삼분, 홍삼엑스, 홍삼타블렛 등 홍삼가공품 : 18년

## 7. 농산물세이프가드 품목 중 무관세쿼타가 제공되는 품목

	품목명	양허유형	최초연도 발동기준 물량(톤)	무관세쿼타		
				제공 기간	최초연도 제공물량(톤)	연간 증량
1	녹두·팥	15년 철폐	238	14년	119	*
2	고구마	10년 철폐	212	9년	106	*
3	기타서류	10년 철폐	30	9년	30	고정
4	보리	15년 철폐	2,500	14년	2,500	복리 2%
5	맥주맥·맥아	15년 철폐	9,000	14년	9,000	복리 2%
6	옥수수(가공용)	7년 철폐	187,547	6년	93,774	*
7	옥수수(팝콘용)	7년 철폐	5,112	6년	2,556	*
8	메밀·기타 곡물	15년 철폐	250	14년	125	*
9	기타 가공곡물	15년 철폐	128	14년	64	*
10	감자분·플레이크	10년 철폐	5,000	9년	5,000	복리 3%
11	옥수수 전분	15년 철폐	10,000	14년	10,000	복리 3%
12	고구마 전분	15년 철폐	202	14년	0.5	0.5톤
13	감자 전분	15년 철폐	239	14년	0.5	0.5톤
14	기타전분	15년 철폐	53	14년	0.5	0.5톤
15	매니옥 전분	15년 철폐	433	14년	0.5	0.5톤
16	발효주정	15년 철폐	236	14년	118	*
17	변성 전분	12년 철폐	14,000	11년	14,000	복리 3%
18	인삼	18년 철폐	62	17년	5.7	복리 3%
실품목 18개						

주) 7개 품목 \* 무관세쿼타 증량 원칙

- \* 녹두·팥, 고구마, 옥수수(가공용), 옥수수(팝콘용), 메밀(기타 곡물), 기타 가공곡물, 발효주정
- 무관세쿼타 물량은 이행 1년차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기준물량의 50%, 2년차는 62.5%, 3년차는 75%, 4년차는 87.5%, 5년차 이후는 100%로 책정
- 세이프가드 발동기준물량에서 무관세쿼타를 제한 물량에는 아래 관세율을 적용
  - 이행 1년차는 55%, 2년차는 40%, 3년차는 25%, 4년차는 15%, 5년차는 0%



## IV. 기타 농업 관련 분야 협상 결과

### 1. 위생 및 검역(SPS) 분과

#### 1.1. SPS 협상 개요

양국은 위생·검역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FTA에서는 신설되는 별도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WTO 협정을 준수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양국간 SPS 관련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SPS 위원회를 설치하되, 양국간 검역문제는 과학적 위험평가와 전문기관간 기술협의를 통해 다루고, 동 위험평가는 양국의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부에서 동 위원회가 통상압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될 것이라고 제기한 우려를 불식하였다. 또 양자간 검역 현안은 FTA 협상과 분리한다는 원칙에 일찌감치 합의하여,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몇 가지의 현안 논의를 위해 별도의 분야별 기술협의를 수차례 개최했다. 동물검역 분야에서는 육류작업장 승인제도 및 지역화 인정 문제를, 바이오텍 관련 분야는 LMO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으며 각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로써 한·미 FTA 위생·검역분야 합의 사항이 현행 검역제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양국간 FTA 체제하에서도 WTO SPS 협정을 준용하고, 분쟁발생시에도 WTO 분쟁 해결절차를 활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WTO SPS 협정 및 국제기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위생·검역제도를 보다 정밀하게 보완·운영해 나갈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양국간에 제기된 문제들이 대부분 양자간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WTO 협정상의 원칙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이는 조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SPS 위원회를 통해 양국의 규제 당국간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SPS 기술협력

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위원회를 통한 정례적인 협의 진행으로 검역조치에 관한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 원산지 분과

원산지 협상은 FTA 체결 당사국 간에 적용되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협상이다. FTA 체결 당사국에서 수출되어도 FTA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특혜관세 대신 WTO 회원국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위생·검역(SPS)과 관련해서는 동 원산지 판정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다. 즉,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에 검역상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기준과는 별도로 있는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판단하여 수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미 FTA에서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 기준에 근접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완전생산기준이란 체결 당사국에서 농산물 생산의 전 과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훼, 채소, 과일, 곡물류의 경우는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원산지를 인정한다. 즉, 캐나다,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재배하거나 수확한 작물을 미국에 수입한 후 우리나라에 재수출하면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육류의 경우 조금 복잡하다. 닭고기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나, 나머지 육류는 도축국 기준을 적용해 제3국산 생축을 수입해 도축한 경우도 원산지를 인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FTA 원산지 기준은 수입가능성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위생·검역 조건을 우회해 수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했다. 참고로 쇠고기는 도축국 기준을 적용해도 위생·검역조건에 의해 캐나다산 생우를 미국에서 도축한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멕시

코산 생우는 미국 내에서 100일 이상 사육 후 도축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육국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가공 농산물 중 민감한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3국에서 수입한 쌀을 제분한 쌀가루, 또는 쌀가루가 들어간 가공식품, 찌쌀은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제3국에서 수입한 인삼을 가공한 제품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제3국에서 수입한 과실, 견과류, 채소를 단순 가공하여 냉동하거나 염수 등에 저장·처리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가공 식품이라도 라면, 소주, 청주 등 대미 수출이 많거나 우리나라산에 대한 선호가 높은 품목은 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산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고려하여,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수출창고에서 섞일 경우 수입국은 수입자에게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V. 한·미 FTA 시대와 식품산업

한·미 FTA 체결의 영향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각계의 반응도 일률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농업계에서는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있었고, 일부 농업인은 지금도 협상 자체에 강한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한·미 FTA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외개방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한·미 FTA를 계기로 하여 어떤 여건 하에서도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식품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초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계의 입장과는 다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만나 본 식품업계 인사들은 식품의 원료가 되는 기초 농산물이나 식재료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에는 그리 큰 거부감은 없었으나, 최종 제품의 경우 이미 관세가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세를 가능한 한 현재와 같이 유지하거나 한·미간의 식품산업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정부도 식품산업의 민감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으며 양허협상에서 최선을 다해 임했으나, 이미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분야의 양허 내용을 기초 농산물에 비해 보수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려웠다고 본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식품분야는 전반적으로 현행 관세수준이 기초 농산물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식품업계에서 한·미 FTA 협상 과정 중 관세 양허와 관련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설탕, 대두유 등 식품 업계에서 특별히 민감하다고 강조해 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은 꾸준히 강조해왔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의 품질경쟁력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특히 최근 식품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품질에 대한 강화 노력이 다각도로 진전되고 있다. HACCP, PL법 등이 일부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것 등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국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질수록 대외 개방 확대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일부 식품 종류는 신선도가 중요한 것이 많아 장거리 운송이 어렵다는 유통상의 특성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의 경우 관세가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산의 수입 확대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또한 미국산의 수입량이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국내 생산량을 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제3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대외개방 심화에 대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지만 매우 큰 수입국이기도 하다. 문제는 가격 경쟁력만으로 경쟁이 치열한 거대시장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 이는 우리 한식의 우수성이나 독특한 풍취를 살리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홍보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극복해야 할 것이다. 기초 농산물과는 달리 식품분야는 시장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잘 준비하면 오히려 해외 진출도 가능한

영역도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같이 DDA 협상이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FTA가 협정 체결 당사국간에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협상인데 비해 DDA 협상은 WTO 회원국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 인하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유통이 범세계적으로 더 촉진될 것이므로 식품업계는 사실 한·미 FTA 대비책이라기보다는 대세계 개방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 농림부는 그동안 규제와 단속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부서를 신설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계에서 활발한 참여와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

